

오해는 제로로! 진실은 제일로!

의료분쟁조정개정법 더 바르게 알기

선배님, 혹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정절차 자동개시?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뭔가요?

의료분쟁조정개정법

이젠, 아무리 사소한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조정절차가 개시된대요. 게다가 거부하면 막대한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의료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액의 30%를 내야한대요~

에~이, 설마~

정말??? 너무 터무니 없는 얘긴데... 뭔가 오해가 있는거 아닐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는 모든 의료사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자율적인 분쟁해결 절차이므로 형사처벌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인 무과실 30% 배상도 유언비어이구요~ 오히려 조정이 성립되면 의료인은 형사처벌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그 사실을 알고 보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오해를 했네~



함께 풀어요, 의료사고
함께 웃어요, 분쟁해결

www.k-medi.or.kr

의료분쟁 무료상담
1670-2545



- 이용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 6시
- 방문상담을 하기 전 전화문의를 하시면 좀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의료중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타워 18층

함께 풀어요, 의료사고
함께 웃어요, 분쟁해결

사고감정은 공정하게 조정절차는 신속하게

새롭게 바뀐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여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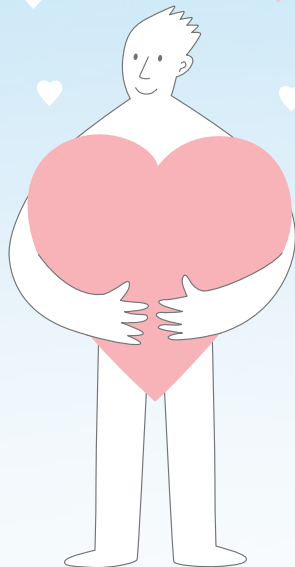


새롭게 바뀐 의료분쟁조정법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이렇게 적용됩니다.

- [조정 신청]**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인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 [조정 개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 [시행 일자]** 2016년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오해는 그만!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본 개정법에 대해 각종 과담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오해 01 조정절차는 모든 경우에 무조건 자동으로 개시된다?

[진실 01] 자동 개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보해야 절차가 개시됩니다.

오해 02 개정법은 강제 조정을 시도하며 이에 불응시 벌칙이 가해진다?

[진실 02]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조정신청이 있을때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여부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집니다. 또한 조정절차가 개시됐음에도 난동, 폭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해 03 조정절차 개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진실 03]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자율적 분쟁해결 절차로 형사처벌과는 무관하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04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무조건 현장 실사를 받는다?

[진실 04] 진료기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만으로는 감정결과를 도출하기에 부족하거나 특별히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되며 7일 전까지 사유 및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측의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운영됩니다.

오해 05 의료인의 무과실 결과가 나와도 의료기관이 30%를 배상한다?

[진실 05] 원인을 알 수 없는 분만 과정의 의료사고(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태아 사망)에 대해 국가(70%)와 의료기관(30% : 산부인과 분만 1건당 약 1,100원의 분담금)이 공동으로 대처해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의료분쟁 예방 시사점



홍길동(가명) 씨는 얼마전 교통사고 당한 후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과거 홍길동씨는 저희 병원에서 디클로페낙베타 디메칠아미노에탄올(이후 상품명 "뉴페낙"으로 표시) 근육주사를 맞은 후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환자임을 고려하여 흔히 쓰이는 뉴페낙 대신 트라마돌염산염을 처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는 뉴페낙을 주사하였고, 홍길동씨는 뉴페낙 주사를 맞고 귀가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홍길동씨는 약 2시간 뒤 알러지 반응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에 내원하였고, 항히스타민제 등의 주사와 경구약을 처방받은 후 다시 귀가하였습니다.



그 이후 홍길동 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손해배상금 3백만 원을 청구하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문건의 적절성, 약 처방 및 투여의 적절성,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의약품 투여와 환자 증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과정을 거친 결과 치료비 면제와 손해배상금 30여만 원을 지급한 뒤 향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약품 투여 과정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간호사는 담당의의 처방을 완전히 이해한 후 투약에 나서야 하며, 약물의 투약 원칙에 따라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처방지시에는 반드시 재확인 등을 거쳐야 만일의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